

2013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엔에이치엔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그린팩토리 2층 Connect Hall

3. 회의의 목적사항

1)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 승인의 건 [별첨1 참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2 참조]

4.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상법 시행령 제31조 5항, 당사 정관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며,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1588-38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엔에이치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현

직인
생략

[별첨 1]

□ 분할계획서

엔에이치엔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 1) 네이버 사업부문과 한게임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각 사업부문별 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인터넷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 3) 각 사업부문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성장가속화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한게임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네이버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 상장할 예정이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한게임 사업부문

2)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3년 3월 8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3년 3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3년 3월 8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3년 5월 1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3년 6월 28일
분할 기일	2013년 8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3년 8월 2일
분할등기(예정)일	2013년 8월 7일

3. 분할신설회사 및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내용
상호	국문명: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영문명: NHN Entertainment Corporation
목적	-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 - 부동산임대업 -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구 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nent.com)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 분	내용
수권주식수	3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5,165,025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5,165,025주

주)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① 배정대상: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배정기준일(2013년 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구 분	배정비율
보통주	0.3150997주

주) 배정비율 산정근거: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③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④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8월 1일

⑥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⑦ 배정기준일: 2013년 7월 31일

⑧ 신주교부예정일: 2013년 8월 28일

⑨ 신주권의 상장계획

-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한다.

- 재상장 예정일: 2013년 8월 29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금액
자본금	보통주 7,582,512,500원
준비금	916,526,842,591원

4. 기타

그 외 분할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내용과 배포해드린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2]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현 행	변 경	비 고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u>엔에이치엔주식회사</u> 라 한다. 영문으로는 <u>NHN Corporation</u> 이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u>네이버 주식회사</u> 라 한다. 영문으로는 <u>NAVER Corporation</u> 이라 표기한다.	-분할에 따른 사명 변경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ncor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ver-cor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URL 변경
제 10 조(신주인수권) 중략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0 조(신주인수권) 중략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근거조항 변경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중략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u>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u> 중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중략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4 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u>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중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개정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거조항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일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 신주의 배당기산일 조항 준용규정 신설

현 행	변 경	비 고
⑧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략)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06.28>	
제 12 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u>근로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u>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u>제 11 조의 2</u>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제 12 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u>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u>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략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u>제 14 조의</u>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근거조항 변경
제14조(주식의 소각) 중략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3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3 제 3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14 조(주식의 소각) 중략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식의 소각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제 35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9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5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9 명 이내로 한다.	-상법 제 542 조의 8 규정에 따라 관련 문구 삭제
제 43 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간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3 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간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오기 정정

현 행	변 경	비 고
제 44 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5 분의 3 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중략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4 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u>관계 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5 분의 3 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중략 ③ <삭제 2013.06.28>	-일반결의 요건보다 강화된 결의를 요하는 법 규정 존재하여 수정 -법령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제 46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 46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u>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u>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제 48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③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8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③<삭제 2013.06.28>	-법적 근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존속 필요성이 낮아 삭제
제 49 조(위원장의 선임과 위원의 해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u>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u>	제 49 조(위원장의 선임과 위원의 해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u>사외이사 중에서</u>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06.28>	-상법 제 542 조의 11 반영하여 대표 요건에 사외이사 추가 및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1 항에 따라 해임 규정 삭제
제 57 조(분기배당) 중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u>자본의 액</u> 중략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신설 2009.3.30> 후략	제 57 조(분기배당) 중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u>자본금의 액</u> 중략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신설 2009.3.30> 7. <u>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신설 2013.6.28></u>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분기배당 한도 규정 변경 및 추가

현 행	변 경	비 고
	부칙 이 정관은 201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